

증평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[2008. 5. 9 조례 제283호]

개정 2008. 6. 27 조례 제 286호
(제명개정)

전부개정 2018. 11. 2 조례 제 825호
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23. 7. 28 조례 제1099호
(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 따른 「증평균
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균에 거주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험료의 지원) 증평균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생활이 어려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(이하 “저소득계층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 대상)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증평균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<개정 2023. 7. 28>

1. 노인세대: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
2. 장애인세대: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
3.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
4. 소년·소녀가장세대: 부모의 사망, 이혼, 가출 등의 사유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
5. 그 밖에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

제4조(지원시기 및 지원방법) 지원 보험료는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.

제5조(지원 대상자의 선정) 군수는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부과 자료 등

증평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
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6조(조사 실시)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(소득·재산)상황, 건강상태,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7조(보험료의 환수)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18. 11. 2 조례 제825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7. 28 조례 제1099호, 만 나이 개정 및 「정부조직법」 개편에
따른 「증평균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